

# 1.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A: ①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 납입을 개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 ②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금리확정형, 계약 후 5년 초과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연금계약 적립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③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세전 기준)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입니다. 단, 실제 중도해지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사망·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시 연금소득세 5.5%~3.3%).

**Q: 연금계약 적립이율이란 무엇인가요?**

- A: 계약자적립액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로,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확정이율, 5년 초과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을 적용합니다.

**Q: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는 무엇인가요?**

- A: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5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유예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합니다.
- ② '①'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기본보험료는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②'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기본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⑦'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에 대한 월공제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

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액[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다만, 추가보험료에 대한 월공제액[계약유지·관리비용(납입후)]은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Q: 보험료의 선납이 가능한가요?**

A: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①’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연금계약 적립이율」로 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③ 선납보험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Q: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추가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만료 2년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②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200%

③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Q: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유예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합니다.

**Q: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의 세제혜택 사항은 무엇인가요?**

A: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④'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text{주1)}} \text{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②'와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에 대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 1. 계약자의 사망
  - 2. 천재지변
  -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7. 계약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⑤ ‘4’의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4’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2’에서 ‘4’을 준용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 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연금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이 소진되면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의 계약이전은 무엇인가요?**

A: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중 하나로써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 ② ‘1’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부

과할 수 있습니다.

③ ‘①’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황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⑤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약관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연금보험 / 금리확정형(계약후 5년 이하), 금리연동형(계약후 5년 초과) / 세제적격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2. 보험기간**

구 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하며,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약관 제19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구 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확정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연금개시나이,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한도 등**

가.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기본보험료 납입한도(1구좌)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구좌)
5년납	0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7만원 ~ 150만원
7년납	0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10년납	0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20년납	0세 ~ (연금개시나이 - 20)세	
전기납	0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나. 연금개시나이: 만 55세 ~ 80세

다.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4. 건강진단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1. 상품의 구성**

- 주계약: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의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 지급 형태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 연금개시나이)년] 보증)

다만,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약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연금 지급 형태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에 지급

- (주) 1.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기타 용어의 정의 바. 계약자적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계약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계약 적립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다만,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20년보증지급형, 30년보증지급형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의 보증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각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7.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8.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9.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10.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11. 다만, 10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 약관 제26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나.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1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3.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가.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1. 적립부분 적용이율(연금계약 적립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이하 “연금계약 적립이율”이라 합니다)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e원금보장 KDB 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연금계약 적립이율은 계약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확정이율을 적용하고 계약후 5년초과시에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입니다.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은 계약후 5년초과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이므로,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sup>(1)</sup>와 운용자산이익률<sup>(2)</sup>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무배당 연금저축 신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sup>(3)</sup>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5.05월 현재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은 연복리 2.6%이며,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가 변동될 경우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도 변동됩니다.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국고채/회사채/통화안정증권/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  
 (2) 운용자산이익률: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일반계정 「무배당 연금저축 신공시기준이율」의 조정률을 가감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공시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3.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연금개시 후>

구 분		50세 연금개시	60세 연금개시	70세 연금개시
개인연금사망률 (40세 가입)	남 자	0.000760	0.001270	0.002710
	여 자	0.000420	0.000480	0.001020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 우리 KDB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 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 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세전 기준) 합니다.

※ 실제 중도해지 시에는 세금이 부과.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사망·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시 연금소득세 5.5%~3.3%)

**2. 해약환급금 예시**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가정 >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여자, 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단위: 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2025년 05월 현재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2.6%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900,000	904,336	100.5%	904,336	100.5%
6개월	1,800,000	1,812,033	100.7%	1,812,033	100.7%
9개월	2,700,000	2,721,103	100.8%	2,721,103	100.8%

1년	3,600,000	3,630,735	100.9%	3,630,735	100.9%
2년	7,200,000	7,270,553	101.0%	7,270,553	101.0%
3년	10,800,000	10,966,025	101.5%	10,966,025	101.5%
5년	18,000,000	18,748,461	104.2%	18,748,461	104.2%
10년	36,000,000	39,575,198	109.9%	39,575,198	109.9%
15년	54,000,000	63,836,652	118.2%	63,836,652	118.2%
20년	72,000,000	91,420,422	127.0%	91,420,422	127.0%

<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중 낮은 이율 가정 >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여자, 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단위: 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중 낮은 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900,000	904,336	100.5%	904,336	100.5%
6개월	1,800,000	1,812,033	100.7%	1,812,033	100.7%
9개월	2,700,000	2,721,103	100.8%	2,721,103	100.8%
1년	3,600,000	3,630,735	100.9%	3,630,735	100.9%
2년	7,200,000	7,270,553	101.0%	7,270,553	101.0%
3년	10,800,000	10,966,025	101.5%	10,966,025	101.5%
5년	18,000,000	18,748,461	104.2%	18,748,461	104.2%
10년	36,000,000	39,575,198	109.9%	39,575,198	109.9%
15년	54,000,000	63,836,652	118.2%	63,836,652	118.2%
20년	72,000,000	91,420,422	127.0%	91,420,422	127.0%

< 최저보증이율 가정 >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여자, 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단위: 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900,000	904,336	100.5%	904,336	100.5%
6개월	1,800,000	1,812,033	100.7%	1,812,033	100.7%
9개월	2,700,000	2,721,103	100.8%	2,721,103	100.8%
1년	3,600,000	3,630,735	100.9%	3,630,735	100.9%
2년	7,200,000	7,270,553	101.0%	7,270,553	101.0%
3년	10,800,000	10,966,025	101.5%	10,966,025	101.5%
5년	18,000,000	18,748,461	104.2%	18,748,461	104.2%
10년	36,000,000	37,242,403	103.5%	37,242,403	103.5%
15년	54,000,000	56,048,322	103.8%	56,048,322	103.8%
20년	72,000,000	75,329,115	104.6%	75,329,115	104.6%

- (주) 1.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연금계약 적립이율로 적립됩니다.
- 2. 계약후 5년 초과부터는 금리연동형 상품이므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이 낮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3. 상기 예시금액은 계약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확정이율, 계약후 5년 초과시는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현재(2025년)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05월)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2.6%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한도로 함)
- 4. 실제 해약환급금은 연금계약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연금계약 적립이율이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연금계약 적립이율은 계약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확정이율, 계약후 5년 초과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합니다.
- 5.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매1개월 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 6.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7. 상기 예시금액은 보험료 납입이 매월 계약 해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의료비 인출 여부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변동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 전 기준입니다.
- 9.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10.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11. 위 예시에서 경과기간 1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약환급금은 해당보험년도말 기준 금액입니다. 그 이후 경과기간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7 모집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기준: 남자, 30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30만원, 20년납, 월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0.00%	0.00%	0.00%	0.00%	0.00%

**8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60세연금개시, 20년납, 남자 30세,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용지급금액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 7년이내: 기본보험료 경과이자의 8.0% (최대 6,000원) - 7년초과: 없음
	계약관리비용	매월	- 10년 이내: 기본보험료 경과이자의 18.0% (최대 12,600원) - 10년 초과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 경과이자의 5.5% (최대 6,000원) -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0.67% (2,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 종신연금형: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8% - 확정연금형: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5%

나. 해약공제액: 없음

다.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보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 경과이자의 5.5% (최대 추가납입보험료의 1.0%)
		납입후 도래하는 매월 계약해당일	추가납입보험료 경과이자의 13.5% (최대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의 0.015%)